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19가단530761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씨엘

담당변호사 이유희, 오세풍, 조상준

피고 1. A

2. B

변론 종결 2021. 3. 29.

판결 선고 2021. 4. 28.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8,798,064원과 그 중 48,408,433원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2020. 1. 6.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A와 피고 B 사이의 2019. 6. 14.자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인천지방법원 2019. 6. 17. 접수 제2164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13. 피고 A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66,500,000원(그 후 그 금액이 48,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보증기한 2010. 5. 12.(그 후 2020. 4. 29.로 변경되었다)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의 지급을 원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약정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기타 원고가 대지급한 채권보전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한편 2019. 7. 19.부터 대위변제금의 약정손해금율은 연 8%이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C은행에 제출하고 C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A가 2019. 9. 30. 자신이 운영하던 D를 폐업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2. 10. 피고 A를 대위하여 C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48,408,433원을 변제하였으며, 원고가 채권보전비용 등으로 지출한 후 남아 있는 대지급금 잔액은 389,631원이다.

라. 피고 A는 2019. 6. 14.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A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6. 14. 피고 B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A를 대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원고에게
합계 48,798,064원(= 대위변제금 48,408,433원 + 대지급금 잔액 389,631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48,408,43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20. 1. 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는, 원고가 피고 A가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총체적 평가에 의하여 보증금액 범위 안에서
위험을 인수한 것이므로, 원고의 구상금 지급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 A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험을 인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약정을 통해 원고가
C은행에게 피고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피고 A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A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는 없다. 피고 A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인 2019. 6. 14.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미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위와 같은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 (2) 그리고 피고 A는 2019. 9. 30. 자신이 운영하던 D를 폐업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위와 같은
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 (3) 또한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9. 12. 10. C은행에게 피고 A의 채무를 대위하여 변제함으로써
원고에게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가 피고 B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 A의 자산상태나 경제적 어려움을 모른 채 기존에 피고 A에게 대여한 1,000만 원의 채권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진영

별지